의 안 번 호 제2641호~제2656호 2025. 9. 9.(화) 10:00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행자위

# 검 토 보 고 서

O 안 건 : 16건

(개정조례안 7, 조례안 2, 동의안 3, 의견청취안 2, 계획안 2)



#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중

# 목 차

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4
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6
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8
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
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… 12
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… 14
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6
장성 군관리계획(필암지구 지구단위계획)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··· 20

# 목 차

□ 장성군 추모공원(공설납골당) 민간위탁 동의안 … 21
□ 장성군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… 23
□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□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… 27
□ 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
□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□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(철도, 공공청사)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········· 32

# 1 /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#### 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641호

O 제출일자 : 2025. 8. 29.

O 제 출 자 : 장성군의회의장(김연수 의원)

O 회부일자 : 2025. 9. 2.

#### 2. 제안이유

O「국가유산기본법」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장성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・보호・관리 및 계승하고,

O 향토문화 보존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O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O 향토문화유산 보호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위원회 설치 및 운영,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안 제5조)
- 지정 및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안 제11조)
- 보존관리 및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안 제18조)

#### 4. 관련법령

〇「국가유산기본법」,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,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안은「국가유산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와 향토유형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성군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・보호・관리・계승하기 위한 것으로써,
-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# 2 /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

#### 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642호

O 제출일자 : 2025. 8. 29.

O 제 출 자 : 장성군의회의장(심민섭 의장)

O 회부일자 : 2025. 9. 2.

#### 2. 제안이유

-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 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하여,
- O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O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O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(안 제4조)
- O 안전시설 설치, 관계인에 대한 권고(안 제5조~안 제6조)
- 화재 대응매뉴얼 제작·배포,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~안 제8조)

#### 4. 관련법령

- O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- O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하여,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 3 / 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·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## 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643호

O 제출일자 : 2025. 8. 29.

O 제 출 자 : 장성군의회의장(차상현 의원)

○ 회부일자 : 2025. 9. 2.

#### 2. 제안이유

- O 장성군 치매 관리 및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,
- 치매안심센터 설치·운영 및 지역사회협의체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치매관리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O 제1장 총칙
  - 조례의 목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안 제5조)
- O 제2장 치매관리·지원
  - 시행계획의 수립 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안 제7조)
  -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안 제10조)
- 제3장 치매안심센터
  - 치매안심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  -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  -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안 제15조)

#### 4. 관련법령

O「치매관리법」제3조 및 제12조의2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매 예방,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치매안심센터 설치・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,
- O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써,
-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 4 /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1. 제안경위

O 의안번호 : 제2644호

O 제출일자 : 2025. 9. 1.

O 제 출 자 : 장성군수(기획실)

O 회부일자 : 2025. 9. 2.

#### 2. 제안이유

O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

O 기금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예금 예치·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(안 제5조)
-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포함(안 제7조제2항)
- O 기금 심의위원회가 아닌 타 위원회에서 심의대행 삭제(안 제7조제3항)
  - → 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~제10조)
- 통합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예치현황 신설(안 제7조제3항)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역관리의무 신설(안 제7조제4항)
- O 기금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(안 제12조)

#### 4. 관련법령

O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, 기금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써,
-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 5 /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

#### 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645호

O 제출일자 : 2025. 9. 1.

O 제 출 자 : 장성군수(기획실)

○ 회부일자 : 2025. 9. 2.

#### 2. 제안이유

○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예비후보자 5명을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장성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각 분야별 전문가를 장성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하여 장성군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 역할 수행
- 위촉 대상자 : 5명

연번	성 명	자 격	주요경력
1	유용운	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	(1985~2018) 구례군청 서기관 퇴직
2	김형수	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	(2018~2019) 장성여중 교감 (2019~2021) 장성중 교감 (2022~2023) 진도석교중 교장
3	양월수	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	(2012~2015) 경성대학교 교수 (2004~2009) 광주대학교 겸임교수
4	이동식	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었던 자 /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	(1981~1998) 현대자동차 팀장 차량기술사 자격 소지 (2002~2004) 전북대 기계공학 박사수료 (2015~2018) 전주비전대 겸임교수
5	김순진	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	(1982~2020) 경상북도 서기관 퇴직 (2020~현재) 조이행정사무소 행정사

-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
  - 가. 위촉인원 : 5명
  - 나. 임 기 : 위촉일로부터 4년(단임)
  - 다. 위원회 기능
    - 1) 지자체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및 민원 처리 지원
    - 2)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
    - 3) 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 필요시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사표명
    - 4) 반복 고질적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· 조정 처리

#### 라. 위위 자격 요건

- 1)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- 2) 판사 ·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- 3)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- 4) 건축사·세무사·공인회계사·기술사·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
- 5)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

#### 4. 관련법령

O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제33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예비후보자 5명을 장성군 군민고충처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장성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 5 /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646호

○ 제출일자 : 2025. 9. 1.

O 제 출 자 : 장성군수(총무과)

○ 회부일자 : 2025. 9. 2.

#### 2. 제안이유

- 돌봄통합지원법 시행('26. 3. 예정)에 따른 시범 지자체 선정과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,
- 첨단 3지구 조성 등 국가·지역 현안사업으로 행정수요 지속 증가에 따른 효율적 대응 인력을 확보 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O 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 : 685명 → 715명 (증 30명)

O 기관별 정원 조정내역

(단위 : 명)

구분	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현행	685	345	17	106	43	174
개정	715	371	17	105	46	176
증감	+30	+26	-	△1	+3	+2

#### 4. 관련법령

- O「지방자치법」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○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30조제2항
- O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2조(용어의 정의)
- ○「돌봄통합지원법」제21조(전담조직 등의 설치·운영)

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 전담조직 신설 및 첨단 3지구 조성 등 국가·지역 현안사업으로 행정수요 지속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 7/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## 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647호

O 제출일자 : 2025. 9. 1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관광과)

O 회부일자 : 2025. 9. 2.

#### 2. 제안이유

- ○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,
- ○「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「장성군 어린이・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, 어린이・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
  - (현행)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  - (개정) 장성군 어린이·시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O 어린이·시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목적과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9조)
-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감독 등(안 제10조 ~ 제12조)

#### 4. 관련법령

- ○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및 제7조 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·지도) 등
- ○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등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안은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.
- ○「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「장성군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,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.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 8 / 장성 군관리계획(필암지구 지구단위계획)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

#### 1. 제안경위

O 의안번호 : 제2648호

○ 제출일자 : 2025. 9. 1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문화교육과)

O 회부일자 : 2025. 9. 2.

#### 2. 제안이유

○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사업(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)의 일환으로 서원 주변 마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관람수용태세 개선을 위하여,

O 사업추진 중인 필암서원 주차장 신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황룡면 필암리 538-3번지 일원(6,342m²)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
  - 농림지역(농업진흥구역 해제) → 계획관리지역(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) 변경
    · 농림지역(농업진흥구역)에서 주차장 조성 불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
- 기 설정된 필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필암서원 국가유산 지정구역과 중복된 구역(5,966㎡)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(국가유산으로 관리 명확화)

#### 4. 관련법령

- 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5조~제32조, 제50조~제52조
-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6장(6-1-1 ~ 6-5-5)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 사업(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)의 일환으로 서원 주변 마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관람수용태세 개선 및 필암서원 주차장 신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,
-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절차 이행사항으로,
-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 9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1. 제안경위

O 의안번호 : 제2649호

O 제출일자 : 2025. 9. 1.

O 제 출 자 : 장성군수(주민복지과)

○ 회부일자 : 2025. 9. 2.

#### 2. 제안이유

○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자 확대로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도모 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 확대(안 제2조)
  - (현행) 보험료 부과액 기준 월10,000원 미만 세대
  - (개정)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
#### 4. 관련법령

- O「사회보장기본법」제10조
- O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1조 및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4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안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자 확대로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.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 10/ 장성군 추모공원(공설납골당) 민간위탁 동의안

#### 1. 제안경위

O 의안번호 : 제2650호

O 제출일자 : 2025. 9. 1.

O 제 출 자 : 장성군수(가족행복과)

O 회부일자 : 2025. 9. 2.

#### 2. 제안이유

○ 자연 친화적 장례문화 선호도 증가 추세에 따른 장례 문화에 적극 대응 및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,

○ 역량있는 민간 전문법인에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「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O 위탁운영 목적
  - 장사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지식 및 풍부한 경험을가진 전문 민간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인 장례 서비스 제공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
- O 위탁내용

- 위탁기간: 2025. 10. 1. ~ 2030. 9. 30.(5년)

- 위탁사업 : 추모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
- 위탁대상 : 장성군 추모공원(삼계면 영장로 900)

#### 4. 관련법령(위탁근거)

- O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8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
- O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(위탁운영)
- O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)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자연 친화적 장례문화 선호도 증가 추세에 따른 장례 문화에 적극 대응 및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,
- 역량있는 민간 전문법인에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「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 11/ 장성군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

#### 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651호

O 제출일자 : 2025. 9. 1.

O 제 출 자 : 장성군수(가족행복과)

O 회부일자 : 2025. 9. 2.

#### 2. 제안이유

- ○「의료·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및 돌봄 통합지원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보호자 부재로 병원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노인을 위한 신규사업인 병원동행서비스 추진을 위하여,
- 민간법인에 위탁운영하고자 「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O 위탁운영 목적
  -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사업인 병원동행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역량있는 민간법인에 위탁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
- O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2025. 9. ~ 12.

- 사업대상 : 보호자 부재로 돌봄 필요 노인 (수급자, 장기요양등급외자 우선지원)

- 사업내용
  - ·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의 병원 이동 지원
  - · 자택부터 병원 출발 및 귀가(진료동행, 병원 접수 및 수납지원)
  - · 의사의 진료결과 및 약처방, 복용법 등 보호자 전달
- 서비스 제공지역 : 장성군 관내
- 이용시간 : 1일 4시간(월~금, 09시~18시)
- 이용금액: 4,000원(수급자·차상위 무료)
- 예약기간 : 이용일 7일 전
- 소요예산 : 50,000천원(고향사랑기금)

#### 4. 관련법령(위탁근거)

- O「노인복지법」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- 「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제24조(통합돌봄 사업)
- O 「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)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「의료·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돌봄통합지원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보호자 부재로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노인을 위한 신규사업인 병원 동행서비스 추진을 위하여,
- O 민간법인에 위탁운영하고자「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.
-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 12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#### 1. 제안경위

O 의안번호 : 제2652호

○ 제출일자 : 2025. 9. 1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환경과)

○ 회부일자 : 2025. 9. 2.

#### 2. 제안이유

○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○ 변경사유 : 2025년도 운용계획 변경(복리증진사업 집행)

※ 월평5리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

O 재 원 :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기타 기금운영

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(단위: 천원)

그ㅂ	항 목 :	수입 및 지출액		증감	
구 분	)O  T	경정	기정	<u> </u>	
	계	1,988,422	1,988,422	-	
수 입	이자수입(a)	52,871	52,871	-	
ТЫ	예치금회수(b)	1,805,551	1,805,551	-	
	전입금(c)	130,000	130,000	-	
	계	1,988,422	1,988,422	-	
지 출	일반보전금(d)	206,540	142,000	64,540	
	예치금(e)	1,781,882	1,846,422	△64,540	

#### 4. 관련법령

O「지방기금법」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변경안은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.
-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 13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#### 1. 제안경위

O 의안번호 : 제2653호

O 제출일자 : 2025. 9. 1.

O 제 출 자 : 장성군수(세무회계과)

O 회부일자 : 2025. 9. 2.

#### 2. 제안이유

○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의2 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정 사항으로,

○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성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O 공유재산 취득·처분 계획 : 취득 1건(토지)

유형	사업명	소재지	면적 (㎡)	재산가액 (천원)	비고
계	1개 사업		33,714.9	920,416	
토지	나노일반산업단지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 매입	남면 삼태리 879	33,714.9	920,416	

#### O 공유재산 관리계획

구 분		필지수 / 동수	면적 (㎡)	재산가액 (천원)	비고
 계		1필지	33,714.9	920,416	
취득	토지	1필지	33,714.9	920,416	

#### 4. 관련법령

○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# 5. 검토의견

- 본 계획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 장성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,
-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 14/ 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654호

○ 제출일자 : 2025. 9. 1.

O 제 출 자 : 장성군수(보건정책과)

O 회부일자 : 2025. 9. 2.

#### 2. 제안이유

○「지역보건법」(시행 2025.3.21.)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O 위원회 설치 목적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)
  - 지역보건법 시행령(2015.11.19. 제2조제5항 → 제3조제3항으로 변경)
- O 위원회의 기능 신설(안 제2조)
  - 보건의료 실태조사, 계획 수립·평가 등
- O 위원회 구성 조정(안 제3조제2항, 4항)
  - 위원장 군수→부군수, 부위원장→위원 중 호선, 당연직 3명→1명

#### 4. 관련법령

- ○「지역보건법」(법률 제20449호, 시행 2025. 3. 21.)
- O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4643호, 시행 2024. 7. 3.)

#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안은 「지역보건법」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 15/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655호

○ 제출일자 : 2025. 9. 1.

O 제 출 자 : 장성군수(보건정책과)

○ 회부일자 : 2025. 9. 2.

#### 2. 제안이유

- 운영위원회의 구성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, 위원장· 부위원장 지정 방식 개선 및 관계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병원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하고,
- O 병원의 주요 운영 전반을 심의·자문하는 기구로, 운영위원 회의 객관성 확보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O 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(안 제5조제3항)
- 위원장·부위원장 지정 방식 및 당연직 위원 조정(안 제5조제4항)
- 위촉직 위원 구성 기준 정비(안 제5조제4항)

#### 4. 관련법령

- ○「치매관리법」제16조의3(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)
- ○「의료법」제33조제2항(개설 등)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, 위원장·부위원장 지정 방식 개선 및 관계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병원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하고,
- O 병원의 주요 운영 전반을 심의·자문하는 기구로, 운영위원 회의 객관성 확보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 16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(철도, 공공청사)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

#### 1. 제안경위

O 의안번호 : 제2656호

O 제출일자 : 2025. 9. 1.

O 제 출 자 : 장성군수(보건정책과)

O 회부일자 : 2025. 9. 2.

#### 2. 제안이유

O 장성군 보건소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, 사무공간 및 보건사업 공간 부족, 주차공간 협소 등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,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(철도, 공공청사)결정 변경(안)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O 공간적 범위

- 위치 :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310-3번지 일원(장성역 주변)

- 면적 : 11,422㎡

O 주요내용

구 분	세 부 내 용
	• 교통시설(철도)
군관리계획	- 철도1 변경 신설(A=606,065㎡→602,876㎡) 감)3,189㎡(0.5%)
결정(변경)(안)	• 공공·문화체육시설(공공청사)
	- 공공청사 A 신설(A=11,422m²)

#### 4. 관련법령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장성군 보건소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, 사무공간 및 보건사업공간 부족, 주차공간 협소 등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,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(철도, 공공청사)결정 변경(안)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절차 이행사항 으로,
- O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